

목 차

| | |
|---|----|
| 주주총회소집공고..... | 1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2 |
|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 4 |
|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4 |
|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4 |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4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4 |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 6 |
|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6 |
| 2.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6 |
| III. 경영참고사항 | 7 |
| 1. 사업의 개요..... | 7 |
| 가. 업계의 현황 | 7 |
| 나. 회사의 현황 | 7 |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8 |
| <input type="checkbox"/> 재무제표의 승인..... | 8 |
| <input type="checkbox"/> 정관의 변경..... | 35 |
| <input type="checkbox"/> 감사의 선임..... | 42 |

주주총회소집공고

2014 년 3 월 5 일

-
회 사 명 : 한국수출포장공업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허용삼, 허정훈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3
(전 화)02-525-2981
(홈페이지)<http://www.keppack.co.kr>

-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전재곤
(전 화)02-525-2981
-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57기 정기주주총회)

삼가 주주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양축합니다.

당사 제57기 정기주주총회를 상법 제365조 및 정관 제1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14년 3월 21일(금) 오전 09:00

2. 장소 : 서울 팔래스호텔 별관 지하1층 그랜드볼룸 B홀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160)

3. 회의의 목적사항

1)보고사항 : ①감사보고, ②영업보고

2)의결사항

제 1호 의안 : 제 57기(2013.01.01~2013.12.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4. 경영 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 경영 참고사항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당사의 본점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실질주주께서 당사가 우편송부한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해 한국예탁결제원에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 우리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제 5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우리 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주의 찬·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실질주주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산정(우편으로 송부해 드린 양식으로 보내주시는 의사표시 수량은 제외함)할 수 있도록 '의사표시 통지서'를 작성·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한 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실질주주께서는 '의사표시 통지서'를 반드시 송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여부와 관계없이 주주총회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6.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가. 본인 참석시 : ① 주총 참석장, ② 신분증

나. 대리인 참석시 : ① 주총 참석장, ②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소유주 식수 기재, 본인의 인감날인), ③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참고 사항

- 주총문의 및 담당자 연락처 : 한국수출포장공업(주) 업무관리팀 최석구 차장 / TEL : 02-525-2981, FAX : 02-522-3546

- 금번 주주총회에는 참석 주주님을 위한 기념품 지급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 | | 안광훈 (출석률: 100%) |
| | | | 찬 반 여부 |
| 1 | 2013.02.15 | 제 5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 |
| 2 | 2013.02.28 | 1.제 56기 기명식 보통주식 현금배당 승인의 건 2.제 5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 상정의 건 3.정관 일부 변경의 건 4.이사, 감사 선임 의안 상정의 건 | ○ |
| 3 | 2013.03.22 | 1.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보고 건 2.감사의 운용실태 평가보고 건 | ○ |
| 4 | 2013.06.14 | 산업은행 시설자금대출 승인의 건 | ○ |
| 5 | 2013.06.24 | 충청북도 음성군 오선일반산업단지 조성및 생산시설 투자의건 | ○ |
| 6 | 2013.08.07 | 산업은행 기한부수입신용장 기한 연장 요청 승인의 건 | ○ |
| 7 | 2013.9.17 | 1.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보고 건 2.감사의 운용실태 평가보고 건 | ○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동내역 | | |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 구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고 |
|------|-----|----------------|-------------|---------------|----|
| 사외이사 | 1명 | 1,700,000,000원 | 12,000,000원 | 12,000,000원 | - |

* 주총승인 금액은 각각 1,700,000천원이 아닌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합쳐서 승인받은 금액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해당사항 없음.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2.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거래

- 해당사항 없음.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골판지 상자는 섬유제품, 전자제품, 식품, 의약품 및 농.수산물등 각종 제품의 외부포장에 사용되는 내용물 보호에 필수적인 제품으로서 포장할 제품에 따라 규격이나 인쇄사양등이 다양하여 한 회사가 일정 규격의 제품을 생산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기는 곤란하며, 대다수 고객의 주문에 따라 생산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 규모의 확대와 농.수산물의 포장및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스티로폼 완충제품이 골판지상자로 대체되는 경향에 힘입어 골판지 상자에 대한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회사는 1957년 11월 21일자로 골판지 원지 및 골판지 상자의 제조, 수출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크라프트 라이너지 및 골판지 와 골판지 상자 제조업, 수출입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당사는 2013년 12월 31일 현재 골판지원지 년산 237,400M/T 골판지및 골판지상자 년산 485,968천m2 생산 시설을 갖춘 일관 생산업체로서 ISO9001 인증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골판지원지는 생산량의 4.5%를 국내 골판지 생산업체에 판매하고 95.5%는 자체 골판지상자 생산에 재투입하고 있으며, 골판지 상자는 가전,식.음료,섬유,생필품용으로 수주, 생산, 납품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농산물의 포장이 골판지 상자로 확대증가하고 있으며, 무,배추의 포장 의무화 추진등으로 농산물 포장비중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전자 상거래의 활성화로 그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타사의 자료확보 어려움과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의 부재로 시장점유율을 생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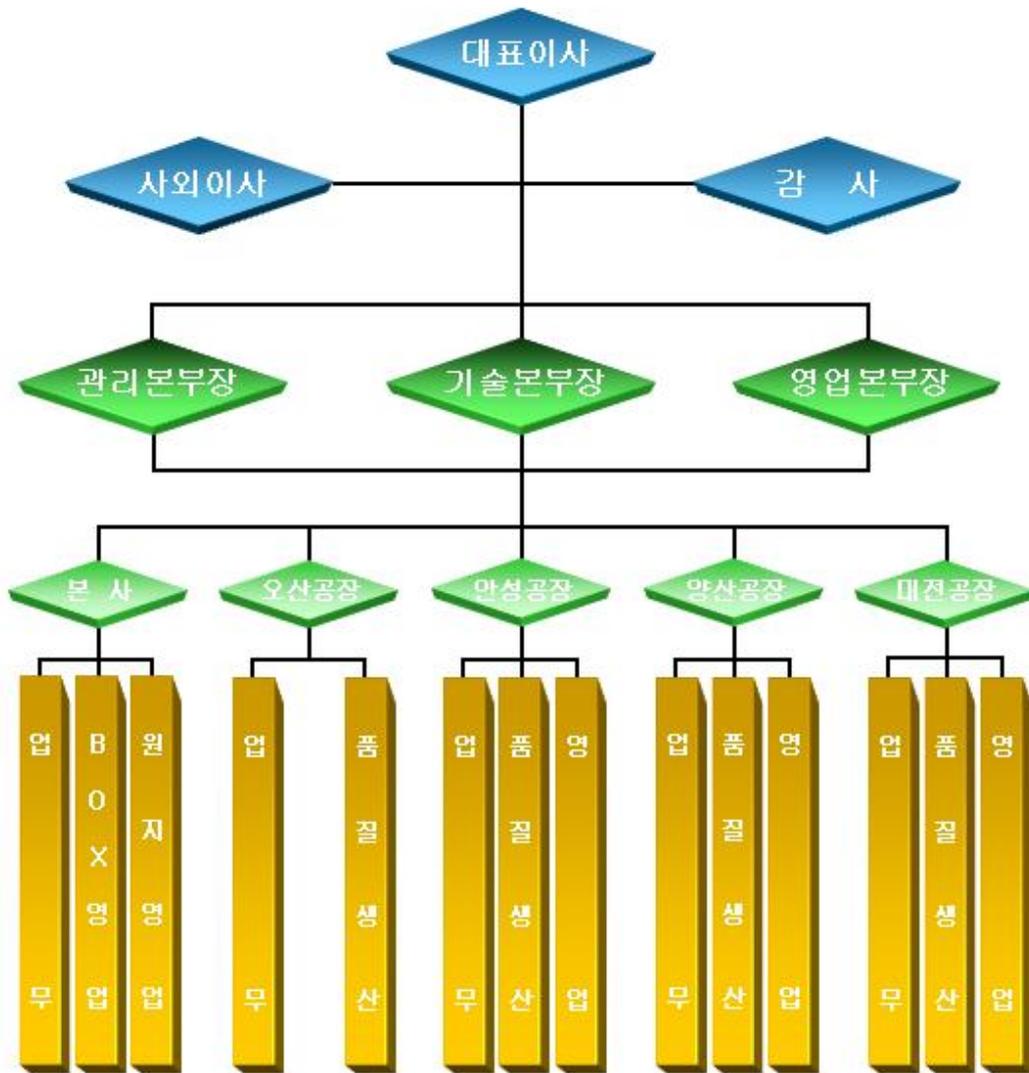
(3) 시장의 특성

골판지 원지는 계획생산에 의하여 재고를 항시 보유하고 지종별 규격 사양에 따라 주문시 국내골판지 제조공장에 즉시 판매, 납품하며 수출용의 경우는 사전에 규격사양을 주문받아 생산, 수출하고 있음. 골판지상자는 전자,섬유,농수산물등의 거래선 주문에 의하여 수주, 생산, 납품하고 있음. 골판지 상자는 100% 주문생산임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해당사항 없음.

(5)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III.경영참고사항의 "사업의 개요"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현금흐름표

※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작성되었으며, 당해 법인의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된 재무제표가 아니므로 동 승인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결 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57(당)기말: 2013년 12월 31일 현재

제56(전)기말: 2012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수출포장공업주식회사와 종속회사

(단위 : 원)

| 과 목 | 제57(당)기말 | | 제56(전)기말 | |
|---------------|-----------------|-----------------|-----------------|-----------------|
| 자산 | | | | |
| I. 유동자산 | | 65,619,770,313 | | 67,993,879,267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10,147,732,197 | | 10,638,472,750 | |
| 2. 단기매출채권 | 39,041,246,899 | | 40,642,960,809 | |
| 3. 기타유동채권 | 1,809,560,406 | | 2,316,131,617 | |
| 4. 재고자산 | 14,621,230,811 | | 14,396,314,091 | |
| II. 비유동자산 | | 214,344,914,784 | | 201,333,556,969 |
| 1. 장기금융상품 | 61,332,644 | | 76,362,926 | |
| 2. 매도가능금융자산 | 2,281,700,000 | | 2,231,700,000 | |
| 3. 기타비유동채권 | 27,644,854 | | 77,394,854 | |
| 4. 유형자산 | 210,581,186,210 | | 197,555,048,113 | |
| 5. 영업권 | 717,076,821 | | 717,076,821 | |
| 6. 영업권이외의무형자산 | 675,974,255 | | 675,974,255 | |
| 자산총계 | | 279,964,685,097 | | 269,327,436,236 |
| 부채 | | | | |
| I. 유동부채 | | 26,927,917,979 | | 30,180,089,725 |
| 1. 단기매입채무 | 9,954,161,946 | | 8,456,612,381 | |
| 2. 기타유동채무 | 8,208,862,791 | | 8,569,989,362 | |
| 3. 단기차입금 | 6,041,854,689 | | 5,972,210,446 | |
| 4. 유동성장기차입금 | 2,018,400,000 | | 1,009,200,000 | |
| 5. 당기법인세부채 | 704,638,553 | | 6,172,077,536 | |
| II. 비유동부채 | | 33,582,721,324 | | 27,869,341,668 |
| 1. 장기차입금 | 14,837,400,000 | | 9,082,800,000 | |
| 2. 퇴직급여채무 | 1,171,089,584 | | 1,192,260,817 | |
| 3. 이연법인세부채 | 17,574,231,740 | | 17,594,280,851 | |
| 부채총계 | | 60,510,639,303 | | 58,049,431,393 |
| 자본 | | | | |
| I. 자본금 | | 20,000,000,000 | | 20,000,000,000 |
| II. 자본잉여금 | | 18,201,025,941 | | 18,201,025,941 |
| III. 이익잉여금 | | 181,253,019,853 | | 173,076,978,902 |
| 자본총계 | | 219,454,045,794 | | 211,278,004,843 |

| | | | | |
|---------|--|-----------------|--|-----------------|
| 부채와자본총계 | | 279,964,685,097 | | 269,327,436,236 |
|---------|--|-----------------|--|-----------------|

-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57(당)기 :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56(전)기 :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국수출포장공업주식회사와 종속회사

(단위 : 원)

| 과 목 | 제57(당)기 | 제56(전)기 |
|----------------|-----------------|-----------------|
| I. 매출액 | 236,572,510,962 | 260,281,725,304 |
| II. 매출원가 | 197,938,298,602 | 199,526,130,983 |
| III. 매출총이익 | 38,634,212,360 | 60,755,594,321 |
| IV. 판매비와관리비 | 23,095,529,167 | 23,456,632,622 |
| V. 영업이익 | 15,538,683,193 | 37,298,961,699 |
| VI. 기타수익 | 373,789,615 | 300,788,911 |
| VII. 기타비용 | 456,411,439 | 3,842,161,475 |
| VIII. 금융수익 | 412,770,158 | 816,159,941 |
| IX. 금융원가 | 413,736,960 | 1,381,809,156 |
| 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5,455,094,567 | 33,191,939,920 |
| XI. 법인세비용 | 4,279,053,616 | 7,222,657,187 |
| XII. 당기순이익 | 11,176,040,951 | 25,969,282,733 |
| XIII. 기타포괄손익 | - | - |
| XIV. 총포괄손익 | 11,176,040,951 | 25,969,282,733 |
| XV. 주당이익 | | |
| 기본주당이익 | 2,794 | 6,492 |
| 희석주당이익 | 2,794 | 6,492 |

- 연결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57(당)기 :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56(전)기 :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국수출포장공업주식회사와 종속회사

(단위 : 원)

| 과 목 | 자 본 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총 계 |
|-----------------|----------------|----------------|-----------------|-----------------|
| 2012.1.1(전기초) | 20,000,000,000 | 18,201,025,941 | 149,107,696,169 | 187,308,722,110 |
| 당기순이익 | - | - | 25,969,282,733 | 25,969,282,733 |
| 연차배당 | - | - | (2,000,000,000) | (2,000,000,000) |
| 2012.12.31(전기말) | 20,000,000,000 | 18,201,025,941 | 173,076,978,902 | 211,278,004,843 |
| 2013.1.1(당기초) | 20,000,000,000 | 18,201,025,941 | 173,076,978,902 | 211,278,004,843 |
| 당기순이익 | - | - | 11,176,040,951 | 11,176,040,951 |

| | | | | |
|-----------------|----------------|----------------|-----------------|-----------------|
| 연차배당 | - | - | (3,000,000,000) | (3,000,000,000) |
| 2013.12.31(당기말) | 20,000,000,000 | 18,201,025,941 | 181,253,019,853 | 219,454,045,794 |

- 연결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57(당기) :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56(전기) :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국수출포장공업주식회사와 종속회사

(단위 : 원)

| 과 목 | 제57(당기) | | 제56(전기) | |
|--------------------|------------------|------------------|------------------|------------------|
| I. 영업활동현금흐름 | | 17,276,559,534 | | 54,669,758,231 |
|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27,125,975,045 | | 59,044,401,971 | |
| 가. 당기순이익 | 11,176,040,951 | | 25,969,282,733 | |
| 나. 조정 | 13,192,510,302 | | 22,437,453,458 | |
| 다. 자산 및 부채의 증감 | 2,757,423,792 | | 10,637,665,780 | |
| 2. 이자수취 | 228,862,139 | | 39,730,624 | |
| 3. 이자지급 | (311,735,940) | | (1,178,825,688) | |
| 4. 법인세납부 | (9,766,541,710) | | (3,235,548,676) | |
| II. 투자활동현금흐름 | | (21,600,337,841) | | (3,844,773,121) |
| 1.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15,030,282 | | | |
| 2. 유형자산의 처분 | 84,389,088 | | 222,506,197 | |
| 3. 기타비유동채권의 감소 | 50,000,000 | | | |
| 4.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 | | (19,008,302) | |
| 5. 매도금융자산의 취득 | (50,000,000) | | | |
| 6. 유형자산의 취득 | (21,699,507,211) | | (3,997,801,016) | |
| 7. 기타비유동채권의 증가 | (250,000) | | (50,470,000) | |
| III. 재무활동현금흐름 | | 3,833,037,754 | | (49,074,007,337) |
| 1. 단기차입금의 증가 | 9,586,584,982 | | - | |
| 2. 단기차입금의 상환 | (9,517,347,228) | | (42,395,007,337) | |
| 3. 장기차입금의 증가 | 7,773,000,000 | | | |
| 3. 장기차입금의 상환 | (1,009,200,000) | | (4,679,000,000) | |
| 4. 배당금의 지급 | (3,000,000,000) | | (2,000,000,000) | |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 | | (490,740,553) | | 1,750,977,773 |
| V.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 10,638,472,750 | | 8,887,494,977 |
| VI.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 10,147,732,197 | | 10,638,472,750 |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주석사항

1. 일반사항

한국수출포장공업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와 종속회사(이하 회사와 종속회사를 '연결회사'라 함)은 1957년에 설립되어 1974년 6월에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회사로서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영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본점소재지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3이며 경기도 오산시 황새로 149번길 11 소재 공장 등 4개

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자본금은 20,000백만원이며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45.46%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종속회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회사명 | 주요사업 | 지분율 | 자본금 | 소재지 |
|--------|----------------|------|---------|------|
| (주)한수팩 | 골판지상자의 제조 및 판매 | 100% | 800,000 | 대한민국 |

당기말 현재 종속회사의 주요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회사명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자본총액 | 매출액 | 당기손익 |
|--------|-----------|-----------|-----------|-----------|---------|
| (주)한수팩 | 3,942,311 | 1,000,566 | 2,941,745 | 8,589,077 | 680,447 |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는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연차보고기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제정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 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 개정서,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2-1-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연결회사는 상기 기준서의 개정에 따라 양도되었으나 전체가 제거되지는 않은 금융자산에 대하여 그 종류별로 양도자산의 성격, 노출된 위험과 보상의 성격, 양도자산과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등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도에 따라 양도 금융자산 전체가 제거되지만 해당 금융자산에 대해 회사가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경우에 지속적 관여를 나타내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지속적 관여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최대노출금액 등 지속적 관여의 성격 및 관련된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동 개정사항은 영업손익 산정방식을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하여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평가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되는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은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 하에, 그리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비상각자산의 장부금액은 비상각자산의 측정기준과 관계없이 매각을 통하여 회수할 것이라는 예상하에서의 예상 세효과를 반영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4호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구 및 그 상호작용

연결회사는 동 해석서의 개정에 따라 최소적립기여금의 선지급에 따른 초과적립액을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1-2. 당기말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연결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타포괄손익 항목을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2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개정)

동 개정사항은 보험수리적손익의 인식선택권 중 범위접근법과 당기손익인식법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동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회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것으로 판단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개정)

동 개정사항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표시와 관련된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상계의 권리는 미래사건에 따른 조건부여서는 안되며 약정기간 중 언제나 행사 가능하여야 하고 기업 자신과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과정인 경우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 지급불능 등인 경우에도 집행가능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결회사는 동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당기말 현재 검토 중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개정)

동 개정사항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표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결회사는 동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제정)

동 기준서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력을 가지는 공동약정을 약정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공동영업과 공동기업으로 분류합니다. 공동영업의 경우 공동영업자는 공동약정의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며, 공동기업의 경우 참여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합니다. 동 기준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결회사는 동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당기말 현재 검토중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제정)

동 기준서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약정 및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모든 형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공시를 규정하는 기준서입니다. 동 기준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당기말 현재 검토 중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제정)

동 기준서는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단일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공정가치를 정의하고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체계를 수립하며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공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결회사는 동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당기말 현재 검토 중입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0호 노천광산 생산단계의 박토원가(제정)

동 해석서는 노천채광활동에서 발생하는 폐석제거원가(박토원가)에 대한 회계처리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 해석서는 2013년 1월 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결회사는 동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아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3. 연결기준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은 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일에 제공한 자산, 발행한 지분증권, 인수하거나 발생시킨 부채의 공정가치의 합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조건부 대가 지급 약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자산·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 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사업결합이 단계적으로 발생한 경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은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와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은 제거됩니다. 미실현손실은 이전된 자산의 손상 여부를 우선 고려하고 제거됩니다.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되었습니다.

2-4. 외화환산

연결회사의 기능통화와 표시통화는 대한민국의 원화입니다.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환산하고 있으며,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외환차이와 관련된 당기손익을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5. 금융자산

2-5-1. 금융자산의 분류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그 조건 및 취득목적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이러한 금융자산의 분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내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유효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대여금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고, 활성시장에서 거래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라. 매도가능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단,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과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5-2.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매각 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5-3.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2-5-4. 금융자산의 손상

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자산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평가합니다. 손상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손상사건이 금융자산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손상된 것으로 보아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 제외함).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실무편의상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을 사용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손상차손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후 발생사건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예:채무자의 신용등급 향상)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직접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매도가능금융자산

연결회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평가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지분상품의 경우, 그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해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취득원가와 현재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 중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을 제외한 부분을 자본에서 재분류 조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않습니다.

2-6.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된 상품 및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할 금액입니다. 매출채권의 회수가 1년 이내인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된 장기성매출채권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은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회사는 매출채권에 대한 통제 또는 지속적인 관여를 할 수 없게 되는 시점에서 매출채권을 매각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7.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품과 재공품의 원가는 원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기타 직접원가와 정상조업도에 근거한 관련 제조간접비로 이루어지며, 유희생산설비원가나 폐기비용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추정판매가격에서 적용 가능한 변동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인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연수 |
|-----------|-------|
| 건 물 | 40년 |
| 구 축 물 | 20년 |
| 기 계 장 치 | 8-20년 |
| 차 량 운 반 구 | 5년 |
| 기타의 유형자산 | 8년 |

연결회사는 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산의 자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검토하고필요한 경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 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즉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2-9.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 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0. 무형자산

2-10-1. 영업권

영업권은 취득시점에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되며,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으로 인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매년 손상검사를 하고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처분으로 인한 처분손익은 매각되는 회사의 영업권 장부금액을 포함됩니다.

영업권은 손상검사 목적으로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으며, 그 배부는 영업권이 발생한 사업결합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식별된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10-2. 기타의 무형자산

기타의 무형자산은 회원권 또는 입회금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비한정적인 것으로 보아 상각하지 않습니다.

2-11.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각하는 자산의 경우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환경의 변화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은 별도로 식별가능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가장 하위 수준의 집단(현금창출단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영업권이나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이외의 비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손상차손의 환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12. 차입금

차입금은 최초에 거래비용을 차감한 순공정가액으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거래비용 차감 후 수취한 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차입기간 동안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기간종료일 이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이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13. 퇴직급여채무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퇴직급여채무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평가기관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지급될 통화로 표시하고 관련 퇴직급여채무의 지급시점을 고려한 할인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상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4.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 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종료일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 의무가 존재하나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기재하고 있습니다.

2-15. 수익인식

수익은 주로 연결회사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며, 내부거래를 제거한 후의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활동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고객의 유형, 거래의 유형 및 개별 거래조건 등의 과거자료를 바탕으로 판매와 관련된 우발상황을 신뢰성있게 추정하여 수익금액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2-15-1. 재화의 판매

연결회사는 제품 및 상품에 대하여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된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과거에 축적된 경험에 근거하여 판매시점에 과거의 경험에 근거하여 추정된 가격할인 및 반품금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5-2.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채권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금액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 (미래 예상현금흐름을 금융자산의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까지 감액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최초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16.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

연결회사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해 자산부채법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관련 이연법인세자산이 실현되고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될 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고기간 종료일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될 세율과 세법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 법인세자산과 당기 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 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 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 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 별도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57(당)기말: 2013년 12월 31일 현재

제56(전)기말: 2012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수출포장공업주식회사

(단위 : 원)

| 과 목 | 제57(당)기말 | | 제56(전)기말 | |
|-------------|----------------|----------------|----------------|----------------|
| 자산 | | | | |
| I. 유동자산 | | 63,357,643,474 | | 66,489,520,580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9,043,448,512 | | 9,920,568,224 | |
| 2. 단기매출채권 | 37,980,882,936 | | 40,044,656,721 | |
| 3. 기타유동채권 | 1,756,091,521 | | 2,199,662,503 | |

| | | | | |
|------------------|-----------------|-----------------|-----------------|-----------------|
| 4. 재고자산 | 14,577,220,505 | | 14,324,633,132 | |
| II. 비유동자산 | | 214,511,152,455 | | 201,454,755,067 |
| 1. 장기금융상품 | 10,500,000 | | 10,500,000 | |
| 2. 매도가능금융자산 | 2,281,700,000 | | 2,231,700,000 | |
| 3. 기타비유동채권 | 27,332,854 | | 77,082,854 | |
| 4. 유형자산 | 209,535,645,346 | | 196,479,497,958 | |
| 5. 영업권이외의무형자산 | 675,974,255 | | 675,974,255 | |
| 6.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 1,980,000,000 | | 1,980,000,000 | |
| 자산총계 | | 277,868,795,929 | | 267,944,275,647 |
| 부채 | | | | |
| I. 유동부채 | | 26,575,036,103 | | 29,840,165,281 |
| 1. 단기매입채무 | 9,946,190,675 | | 8,436,045,944 | |
| 2. 기타유동채무 | 8,005,797,667 | | 8,349,519,415 | |
| 3. 단기차입금 | 6,041,854,689 | | 5,972,210,446 | |
| 4. 유동성장기차입금 | 2,018,400,000 | | 1,009,200,000 | |
| 5. 당기법인세부채 | 562,793,072 | | 6,073,189,476 | |
| II. 비유동부채 | | 33,511,318,774 | | 27,806,496,489 |
| 1. 장기차입금 | 14,837,400,000 | | 9,082,800,000 | |
| 2. 퇴직급여채무 | 1,093,043,040 | | 1,122,771,644 | |
| 3. 이연법인세부채 | 17,580,875,734 | | 17,600,924,845 | |
| 부채총계 | | 60,086,354,877 | | 57,646,661,770 |
| 자본 | | | | |
| I. 자본금 | | 20,000,000,000 | | 20,000,000,000 |
| II. 자본잉여금 | | 18,201,025,941 | | 18,201,025,941 |
| III. 이익잉여금 | | 179,581,415,111 | | 172,096,587,936 |
| 자본총계 | | 217,782,441,052 | | 210,297,613,877 |
| 부채와자본총계 | | 277,868,795,929 | | 267,944,275,647 |

- 별도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57(당기) :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56(전기) :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국수출포장공업주식회사

(단위 : 원)

| 과목 | 제57(당기) | 제56(전기) |
|-------------|-----------------|-----------------|
| I. 매출액 | 234,309,970,362 | 258,434,924,625 |
| II. 매출원가 | 197,429,312,671 | 198,954,411,801 |
| III. 매출총이익 | 36,880,657,691 | 59,480,512,824 |
| IV. 판매비와관리비 | 22,264,323,641 | 22,742,504,369 |
| V. 영업이익 | 14,616,334,050 | 36,738,008,455 |

| | | |
|----------------|----------------|----------------|
| VI. 기타수익 | 372,599,863 | 297,383,416 |
| VII. 기타비용 | 430,418,954 | 3,830,398,716 |
| VIII. 금융수익 | 399,992,326 | 802,839,239 |
| IX. 금융원가 | 413,224,765 | 1,381,809,156 |
| 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4,545,282,520 | 32,626,023,238 |
| XI. 법인세비용 | 4,060,455,345 | 7,110,857,405 |
| XII. 당기순이익 | 10,484,827,175 | 25,515,165,833 |
| XIII. 기타포괄손익 | - | - |
| XIV. 총포괄손익 | 10,484,827,175 | 25,515,165,833 |
| XV. 주당이익 | | |
| 기본주당이익 | 2,621 | 6,379 |
| 희석주당이익 | 2,621 | 6,379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57(당기) :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56(전기) :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 과 목 | 제 57 기 | 제 56 기 |
|---|----------------|----------------|
| I. 미처분이익잉여금 | 11,872,443,733 | 26,687,616,558 |
|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1,387,616,558 | 1,172,450,725 |
| 2. 당기순이익 | 10,484,827,175 | 25,515,165,558 |
| II.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 | |
| 합 계 | 11,872,443,733 | 26,687,616,558 |
| III. 이익잉여금 처분액 | 10,700,000,000 | 25,300,000,000 |
| 1. 이익준비금 | 200,000,000 | 300,000,000 |
| 2. 배당금 | 2,000,000,000 | 3,000,000,000 |
| 가. 현금배당 (당기주당배당금(율): 500원(10%) 전기주당배당금(율): 750원(15%)) | 2,000,000,000 | 3,000,000,000 |
| 3. 임의적립금 | 8,500,000,000 | 22,000,000,000 |
| IV.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 1,172,443,733 | 1,387,616,558 |

- 별도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57(당기) :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56(전기) :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국수출포장공업주식회사

(단위 : 원)

| 과 목 | 자 본 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총 계 |
|-----------------|----------------|----------------|-----------------|-----------------|
| 2012.1.1(전기초) | 20,000,000,000 | 18,201,025,941 | 148,581,422,103 | 186,782,448,044 |
| 당기순이익 | - | - | 25,515,165,833 | 25,515,165,833 |
| 연차배당 | - | - | (2,000,000,000) | (2,000,000,000) |
| 2012.12.31(전기말) | 20,000,000,000 | 18,201,025,941 | 172,096,587,936 | 210,297,613,877 |
| 2013.1.1(당기초) | 20,000,000,000 | 18,201,025,941 | 172,096,587,936 | 210,297,613,877 |
| 당기순이익 | - | - | 10,484,827,175 | 10,484,827,175 |
| 연차배당 | - | - | (3,000,000,000) | (3,000,000,000) |
| 2013.12.31(당기말) | 20,000,000,000 | 18,201,025,941 | 179,581,415,111 | 217,782,441,052 |

- 별도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57(당)기 :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56(전)기 :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국수출포장공업주식회사

(단위 : 원)

| 과 목 | 주 석 | 제57(당)기 | 제56(전)기 |
|--------------------|-----|------------------|------------------|
| I. 영업활동현금흐름 | | 16,880,239,023 | 54,374,811,645 |
|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 26,565,512,172 | 58,705,465,731 |
| 가. 당기순이익 | | 10,484,827,175 | 25,515,165,833 |
| 나. 조정 | 27 | 12,783,820,617 | 22,166,356,306 |
| 다. 자산 및 부채의 증감 | 27 | 3,296,864,380 | 11,023,943,592 |
| 2. 이자수취 | | 216,851,456 | 26,409,922 |
| 3. 이자지급 | | (311,223,745) | (1,178,825,688) |
| 4. 법인세납부 | | (9,590,900,860) | (3,178,238,320) |
| II. 투자활동현금흐름 | | (21,590,396,489) | (3,829,176,638) |
| 1. 유형자산의 처분 | | 67,116,360 | 197,506,197 |
| 2. 기타비유동채권의 감소 | | 50,000,000 | |
| 3.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 (50,000,000) | |
| 4. 기타비유동채권의 증가 | | (250,000) | (50,570,000) |
| 5. 유형자산의 취득 | | (21,657,262,849) | (3,976,112,835) |
| III. 재무활동현금흐름 | | 3,833,037,754 | (49,074,007,337) |
| 1. 단기차입금의 증가 | | 9,586,584,982 | - |
| 2. 단기차입금의 상환 | | (9,517,347,228) | (42,395,007,337) |
| 3. 장기차입금의 증가 | | 7,773,000,000 | |
| 4. 장기차입금의 상환 | | (1,009,200,000) | (4,679,000,000) |
| 5. 배당금의 지급 | | (3,000,000,000) | (2,000,000,000) |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 | | (877,119,712) | 1,471,627,670 |
| V.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 9,920,568,224 | 8,448,940,554 |
| VI.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27 | 9,043,448,512 | 9,920,568,224 |

- 별도재무제표의 주석

1. 일반사항

한국수출포장공업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1957년에 설립되어 1974년 6월에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회사로서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의 제조, 판매 등을 주영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본점소재지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3이며 경기도 오산시 누읍동 소재 공장 등 4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회사의 자본금은 20,000백만원이며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45.46%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는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연차보고기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제정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 개정서,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또한 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2-1-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회사는 상기 기준서의 개정에 따라 양도되었으나 전체가 제거되지 않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그 종류별로 양도자산의 성격, 노출된 위험과 보상의 성격, 양도자산과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등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도에 따라 양도 금융자산 전체가 제거되지만 해당 금융자산에 대해 회사가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경우에 지속적 관여를 나타내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지속적 관여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최대 노출금액 등 지속적 관여의 성격 및 관련된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동 개정사항은 영업손익 산정방식을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하여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평가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되는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은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 하에, 그리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비상각자산의 장부금액은 비상각자산의 측정기준과 관계없이 매각을 통하여 회수할 것이라는 예상하에서의 예상 세효과를 반영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4호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구 및 그 상호작용

회사는 동 해석서의 개정에 따라 최소적립기여금의 선지급에 따른 초과적립액을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1-2. 당기말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회사가 조기에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타포괄손익 항목을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2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회사는 동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개정)

동 개정사항은 보험수리적손익의 인식선택권 중 범위접근법과 당기손익인식법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동 기준서의 개정이 회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개정)

동 개정사항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표시와 관련된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상계의 권리는 미래사건에 따른 조건부여서는 안되며 약정기간 중 언제나 행사 가능하여야 하고 기업 자신과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과정인 경우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 지급불능 등인 경우에도 집행가능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4년 1월 1일 이

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회사는 동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당기말 현재 검토 중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개정)

동 개정사항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표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회사는 동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제정)

동 기준서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력을 가지는 공동약정을 약정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공동영업과 공동기업으로 분류합니다. 공동영업의 경우 공동영업자는 공동약정의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며, 공동기업의 경우 참여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합니다. 동 기준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회사는 동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당기말 현재 검토중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제정)

동 기준서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약정 및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모든 형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공시를 규정하는 기준서입니다. 동 기준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회사는 동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당기말 현재 검토 중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제정)

동 기준서는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단일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공정가치를 정의하고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체계를 수립하며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공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회사는 동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당기말 현재 검토 중입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0호 노천광산 생산단계의 박토원가(제정)

동 해석서는 노천채광활동에서 발생하는 폐석제거원가(박토원가)에 대한 회계처리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 해석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회사는 동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2.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투자자와 관계기업투자 및 조인트벤처투자

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법으로 표시한 재무제표이며, 종속기업, 관계기업 또는 공동지배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그 배당금을 별도재무제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종속기업투자자와 관계기업투자 및 조인트벤처투자자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1호를 적용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2-3. 외화환산

회사의 기능통화와 표시통화는 대한민국의 원화입니다.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 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환산하고 있으며,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외환차이와 관련된 당기손익을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금융자산

2-4-1. 금융자산의 분류

회사는 금융자산을 그 조건 및 취득목적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이러한 금융자산의 분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내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유효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대여금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고, 활성시장에서 거래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라. 매도가능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단,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과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4-2.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매각 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4-3.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2-4-4. 금융자산의 손상

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자산

회사는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평가합니다. 손상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손상사건이 금융자산의 추정 미래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손상된 것으로 보아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 제외함).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실무편의상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을 사용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손상차손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후 발생사건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예:채무자의 신용등급 향상)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직접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매도가능금융자산

회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평가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지분상품의 경우, 그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해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취득원가와 현재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 중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을 제외한 부분을 자본에서 재분류 조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않습니다.

2-5.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된 상품 및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할 금액입니다. 매출채권의 회수가 1년 이내인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된 장기성매출채권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은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매출채권에 대한 통제 또는 지속적인 관여를 할 수 없게 되는 시점에서 매출채권을 매각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6.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품과 재공품의 원가는 원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기타 직접원가와 정상조업도에 근거한 관련 제조간접비로 이루어지며, 유희생산 설비원가나 폐기비용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추정판매가격에서 적용 가능한 변동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인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연수 |
|-----------|-------|
| 건 물 | 40년 |
| 구 축 물 | 20년 |
| 기 계 장 치 | 8-20년 |
| 차 량 운 반 구 | 5년 |
| 기타의 유형자산 | 8년 |

회사는 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산의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즉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2-8.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 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9. 무형자산

2-9-1. 영업권

영업권은 사업결합원가 중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및 인식한 우발부채의 공정가치 순액에 대한 취득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의 공정가치 순액에 대한 취득자의 지분이 사업결합원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영업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원가로 측정합니다.

2-9-2. 기타의 무형자산

기타의 무형자산은 회원권 또는 입회금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비한정적인 것으로 보아 상각하지 않습니다.

2-10.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각하는 자산의 경우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환경의 변화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은 별도로 식별가능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가장 하위 수준의 집단(현금창출단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영업권이나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이외의 비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손상차손의 환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11. 차입금

차입금은 최초에 거래비용을 차감한 순공정가액으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거래비용 차감 후 수취한 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차입기간 동안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기간종료일 이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이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12. 퇴직급여채무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퇴직급여 채무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평가기관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지급될 통화로 표시하고 관련 퇴직급여채무의 지급시점을 고려한 할인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상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3.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 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종료일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 의무가 존재하나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기재하고 있습니다.

2-14. 수익인식

수익은 주로 회사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며, 내부거래를 제거한 후의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활동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의 유형, 거래의 유형 및 개별 거래조건 등의 과거자료를 바탕으로 판매와 관련된 우발상황을 신뢰성 있게 추정하여 수익금액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2-14-1. 재화의 판매

회사는 제품 및 상품에 대하여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과거에 축적된 경험에 근거하여 판매시점에 과거의 경험에 근거하여 추정한 가격할인 및 반품금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4-2.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채권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금액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미래 예상현금흐름을 금융자산의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까지 감액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최초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15.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

회사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해 자산부채법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관련 이연법인세자산이 실현되고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될 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고기간종료일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될 세율과 세법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 법인세자산과 당기 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 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 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 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구 분 | | 제57기 | 제56기 |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 보통주 | 500 | 750 |
| | 우선주 | - | - |
| 배당금 총액 | | 20억원 | 30억원 |
| 현금배당수익률 (%) | 보통주 | 2.22% | 4.23% |
| | 우선주 | - | - |
| - 시가배당율(%) | | - | - |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해당사항 없음.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p>제10조의 1 (신주인수권)</p> <p>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p> <p>②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p> <p>1.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p> <p>2.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p> <p>3. 해외증권발행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 <p>제10조의 1 (주식의 발행 및 배정)</p> <p>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p> <p>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p> <p>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또는 액면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p> <p>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또는 액면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p> <p>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p> <p>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p> <p>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p> <p>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p> | <p>-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1항 참조</p> <p>-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4항 참조</p> <p>-자본시장법 제165조의9참조</p> <p>-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2항, 동법시행령 제176조의8 제2항, 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 참조</p> <p>-단주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항으로 규정함.</p> <p>-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3항 참조</p> |
|---|---|---|

| | | |
|--|--|--|
| | <p>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p> <p>4.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p> <p>③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p> <p>④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⑤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⑥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⑦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p> | |
|--|--|--|

| | | |
|--|---|---|
| <p>제14조(전환사채의 발행)</p> <p>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할 수 있다.</p> <p>③ 전환으로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p> <p>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는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p> | <p>제14조(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p> <p>①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1.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2.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②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p> <p>1.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p> <p>2.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p> <p>3.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p> | <p>-자본시장법 제165조의10 제1항(동법 제165조의6 제4항 준용) 참조</p> <p>-자본시장법제165조의10제1항(동법제165조의6제4항 준용) 참조</p> |
|--|---|---|

| | | |
|--|---|--|
| | <p>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p> <p>③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p> <p>④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p> <p>⑤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익일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는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⑥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p> | |
|--|---|--|

| | | |
|---|---|---|
| <p>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p> <p>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p> <p>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p> <p>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인하여 발행하는주식에 대한 리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p> | <p>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p> <p>①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1.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2.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②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p> <p>1.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p> <p>2.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p> <p>3.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p> | <p>-자본시장법제165조의10제1항(동법제165조의6제1항 준용) 참조</p> <p>-자본시장법 제165조의10 제1항(동법 제165조의6 제4항 준용) 참조</p> |
|---|---|---|

| | | |
|--|--|--|
| | <p>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p> <p>③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p> <p>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p> <p>⑤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⑥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p> | |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선임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안용수 | 1952.1.14 | 없음 | 이사회 |
| 총 (1) 명 | |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현재) | 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안용수 | 한국수출포장공업(주)감사 | 한국수출포장공업(주) 상무이사역임 | 없음 |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 | |
|-------------|-----|
| 선임 예정 감사의 수 | (명) |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